

외항선에 대한 PI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국토교통성 해사국

일본국 연안에 방치되는 좌초선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에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이후에 일본국에 입항하는 외항선에 대한 PI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항이 금지됩니다.

1. 대상 선박

- 100톤 이상의 외항선(석유수송선을 제외)
- ※석유수송선에 대해서는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2. 보험 내용

- 대상: 선체 철거비용, 연료유에 의한 유탁(油濁)손해
- 최저보험금액: 76LLMC에 준한다.
- ※76LLMC: 1976년의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조약

최저보험금액 예: 100톤의 경우…… 66.7만 SDR = 약 98만 USD
1000톤의 경우…… 108.4만 SDR = 약 159만 USD
10000톤의 경우…… 742.1만 SDR = 약 1092만 USD
※1 SDR = 1.471USD로 계산(2004년 6월 1일 현재)

3. 증명서 등의 비치

- 입항시에는 선내에 국토교통대신 발행의 증명서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지정보험자」인 경우에는 증명서 대신에 보험증서)
- ※증명서 교부의 신청방법 및 「지정보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입항통보

-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항전에 지방운수국 앞으로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5. 입항검사 등

- 담당관이 증명서 등의 검사를 위하여 대상 선박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장이 유효한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장계약체결 명령과 항해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외에 형사처벌 적용대상이 됩니다.

6. 시행일

- 2005년 3월 1일 이후
(단, 증명서 교부신청 접수는 2004년 12월 1일 이후)

문의처

- 국토교통성 해사국 총무과
Tel:+81-3-5253-8608, Fax:+81-3-5253-1642, Email: maritime@milt.go.jp
- 국토교통성 지방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문의는 일본어에 한함)
Tel: , Fax: